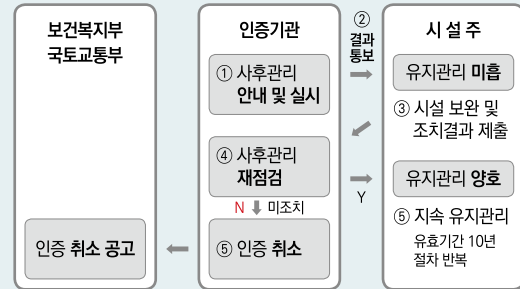


BF인증 사후관리 절차 및 유의사항



BF인증 사후관리 절차



※ 천재지변, 감염병 등 국가재난 또는 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사후관리 일정 변경 요청 가능

BF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의무화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21. 12. 4.시행)

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제3항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(이하 "의무인증시설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(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)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의3(인증의 유효기간) 제1항

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.

제27조(과태료) 제1항 제1호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(예비인증을 포함한다)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

- 인증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 이는,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. <법률 제16739호 부칙 제3조>
-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을 신청하여, 연장하여야 합니다.
-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,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유의사항

인증 취득 후 유효기간 내 증축(수직, 수평), 리모델링, 설계변경, 시설 및 설비 신규 설치는 사후관리와 재인증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, 인증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필수적으로 검토바랍니다.

문의사항(인증기관)

- 한국 장애인 개발원 02-3433-0683(서울)
070-5089-5144(대구)
070-5089-4842(광주)
070-7510-1938(강원)
- 한국 토지 주택 공사 031-738-4548
-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031-728-7093
-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02-6973-9039
- 한국 부동산원 053-663-8086
-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02-456-9432
- 한국환경건축연구원 02-6287-0886
-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02-6911-454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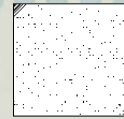
인증 현황, 다양한 사례 및 기준을 보고 싶다면

대표 홈페이지: <https://koddi.or.kr/bf/>

혹은 QR코드



Barrier Free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

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(BF)인증제도 사후관리 매뉴얼



BF인증 사후관리 개요



BF인증 사후관리 주체

- 인증기관: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인증 취득한 때와 동일한 수준, 환경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. 유지관리기 체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수정을 요청하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- 시설관리자: 시설물 소유 및 시설 관리하는 시설의 주체는 인증을 취득한 때와 동일한 환경이나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물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.

BF인증 사후관리 실시 근거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이하 장애인등편의법) 제10조의5(인증의 사후관리)
-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, 제12조의2(사후관리)

BF인증 사후관리 주된 점검 내용

- 인증 취득 후 시설물 구조·변경에 대한 점검
- 노후화, 잠금, 폐쇄, 가구 설치 등 시설 유지관리 미비 사항에 대한 점검 등

BF인증 평가항목

- 매개시설
 - 접근로
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
 - 출입구
- 내부시설
 - 일반출입구
 - 복도
 - 계단
 - 경사로
 - 승강기
- 위생시설
 -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
 - 화장실의 접근
 - 대변기
 - 소변기
 - 세면대
 - 욕실
 - 샤워실 및 탈의실
- 안내시설
 - 안내설비
 - 경보 및 피난설비
- 기타시설
 - 객실 및 침실
 - 관람석 및 열람석
 -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
 - 매표소 등
 - 피난구 설치
 - 임산부휴게시설
 - 비치용품

※ 설치된 시설은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. (창고, 기계실 등 유사한 용도 제외)

사후관리 점검 사례

외부 공간



1 디딤석 등 접근로 신설
▶ 접근로 기준 부적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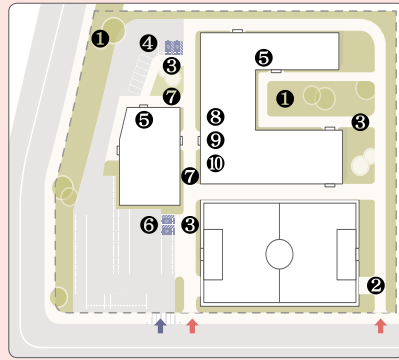
2 접근로 파손
▶ 접근로 기준 부적합



3 보행장애물 추가 설치
▶ 접근로 기준 부적합



4 주차장에 접근로(차량 교행) 신설
▶ 접근로 기준 부적합



[매개시설]



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 이동
▶ 차량 교행 발생으로 기준 부적합



8 촉지도시 안내판 부식
▶ 이용 및 내용 인지 불가



9 촉지도시안내판 제거 & 위치이동
▶ 안내시설 기준 부적합



5 승강기 잠금 및 폐쇄
▶ 이용 불가



7 외부 계단 렉산 지붕(기둥) 설치
▶ 접근로 및 계단 손잡이 기준 부적합



10 점형블록 위 덮개, 물건 등 적치
▶ 이용 및 내용 인지 불가

내부 공간



1 신설된 출입문의 기준 미확보
▶ 출입문(손잡이, 유효폭)기준 부적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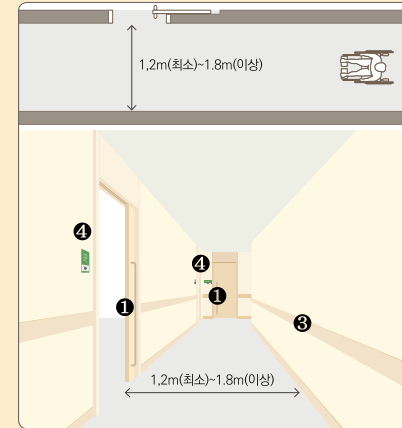
2 외부 & 내부 계단 신설
▶ 계단의 기준 부적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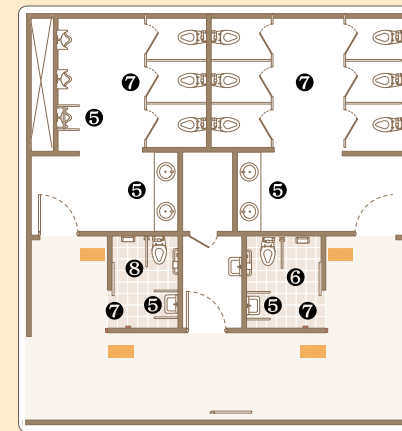
5 손잡이 파손 및 세면대 덮개 설치
▶ 위생시설 기준 부적합



7 잠금장치 파손
▶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가



[내부시설]



[위생시설]



3 가구 등 보행장애물 설치
▶ 복도 기준 부적합



4 실 명칭 변경에 따른 점자 불일치
▶ 안내설비 기준 부적합



6 화장실 변경 공사
▶ 장애인들의 화장실 기준 부적합



8 창고, 세탁실 등 변경 & 물건 적치
▶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가

유지관리 적정 사례



▶ 접근로 기준 유지



▶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기준 유지



▶ 무대 경사로 기준 유지



▶ 샤워탈의실 물건 미적치, 탈의장 하부공간 확보 등 기준 유지



▶ 휠체어 관람석 크기, 동반좌석 등 기준 유지



▶ 안내데스크 하부공간 확보 기준 유지